

보도 일시	2022. 4. 19.(화) 14:00	배포 일시	2022. 4. 19.(화)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윤희창 (044-201-6843)

## 대산산업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민·관·산 협력 다짐 - 환경부 · 서산시 · 입주기업 · 시민사회대표 자발적 협약 체결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서산시(시장 맹정호), 대산산업단지(충남 대산읍 소재) 내 입주기업 10개사\*, 협의체 시민사회대표 등과 4월 19일 서산시청에서 대산산업 인근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대기질을 제공하고자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롯데케미칼(주), (주)씨텍, (주)엘지화학, (주)케이씨아이,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한국석유공사, 한화토탈에너지스(주), 현대오일뱅크(주), 현대케미칼(주), 현대코스모(주)
- 이번 협약은 각 이해당사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벤젠의 주요 배출원을 확인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 중 벤젠 농도 저감을 위해 민·관·산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서산시가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배출저감 지역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 \*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인 이상)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감계획을 제출받아 공개하는 제도
  - \*\*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협의체
-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는 2019년 11월부터 도입됐으며,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앞으로 5년간 저감 목표와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저감방안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 ①트리클로로에틸렌, ②벤젠, ③염화비닐, ④1,3-부타디엔, ⑤디클로로메탄,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⑦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⑧아크릴로니트릴, ⑨클로로포름

○ 배출저감 목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목표 달성이 강제 사항은 아니나, 그동안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해 왔다.

□ 이에 서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단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대상 기업(6개사\*)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 롯데케미칼(주), (주)엘지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주), 현대오일뱅크(주), 현대케미칼(주), 현대코스모(주)

○ 지난해 협의체에서는 대산산단의 대기 중 벤젠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참여자 다수가 저감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지난달에 벤젠 등을 취급하는 대산산단 내 기타 입주기업까지 포함시켜 총 10개사가 저감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는 사업장 안팎에서 벤젠 농도 실측 등 현장 분석을 통해 주요 배출원을 확인하고, 입주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발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사회는 저감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산단지역의 민감한 환경 쟁점을 시민사회와 기업,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긴밀한 소통·협력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대산산단 협약을 통해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축·운영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 주요 산단의 고유해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요.  
 2.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화학안전과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윤희창 (044-201-6843)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책임자	과 장	윤준현 (043-830-4210)
		담당자	연구관	윤대식 (043-830-4235)
	서산시 환경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종민 (041-660-2340)
		담당자	팀 장	이희군 (041-661-8280)



※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 □ 저감 대상물질 및 사업장

- 국내 다량 배출 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 배출저감제도 이행절차

- (작성·제출) 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 배출량, 저감기술, 저감방안 및 저감 목표\*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 (→안전원, ~4.30.)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전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하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자율 설정

- (접수·검토) 저감계획서의 정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안전원)를 실시(~6.30.)하고 목표가 소극적이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 배출저감 방안의 적절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하되, 기업 특성(업종, 규모, 공정 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유사 성격의 사업장간 동일한 기준 적용)

- (계획서공개) 지자체는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제품 정보 (물질함량, 취급량 등)를 제외한 요약계획서를 공개

\* (공개방식) ①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②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이행확인)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4.30.)를 통하여 이행실적 확인

\* 배출저감 이행실적 자료를 지자체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사업장 출입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이행여부 점검

## 대산지역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대산지역의 대기 중 벤젠 농도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배출원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환경부, 서산시, 참여기업 및 시민사회(이하 '협약 당사자') 등이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벤젠 농도 저감에 공동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대기 중 벤젠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 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협약 당사자는 주요 벤젠 배출원을 확인하고 대기 중 농도 저감을 위해 다음의 협약 당사자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한다.

1. 환경부 : 서산시의 대산지역 벤젠 농도 저감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주요 배출원 확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내 농도 실측 등 현장 분석 및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2. 서산시 : 지역화학안전협의회 운영 및 대산지역 벤젠 농도 저감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사업장 밖의 농도 실측 등 환경부의 현장 분석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참여기업 : 지역화학안전협의회에 참여하고 벤젠을 취급하거나 배출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입·출하 및 시설 개방 등 주요 작업에 대한 일정 제공 및 측정자의 사업장 출입 등 주요 벤젠 배출원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저감방안 마련 등 대산지역 대기 중 벤젠 농도 저감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4. 시민사회 : 지역화학안전협의회에 참여하고 협약에 따른 추진사항이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위해 예방에 기여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등 대산지역 벤젠 농도 저감활동에 협력한다.

**제3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보고)** 협약 당사자는 제2조에 따른 협력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로 상호 협의·협력한다. 아울러, 서산시는 진행 상황, 분석 결과 및 저감 대책 등 중요 사항은 지역화학안전협의회에 상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지역화학안전 협의회 의결을 통해 종결을 결정한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22년 4월 19일



환경안전부문  
공장장 신 승 환



대표이사 최 성 열



환경안전담당  
공장장 장 철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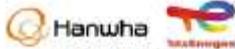
공장장 이 재 기



공장장  
상무 문 희 순



서산지사장 박 순 길



안전환경담당  
전무 이 종 화



EHS경영부문장  
상무 임 평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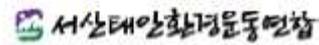


EHS담당그룹  
상무 김 창 호



안전환경담당  
상무 이 영 우

협의회 시민사회대표



사무국장 권 경 숙



화학안전과장 손 삼 기



경제환경국장 김 인 수